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제정이유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4조)

나.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정함 (안 제5조)
- 숲속의 집 : 15:00~다음날12시, 야영장 : 10:00~ 다음날 10시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사항을 정함(제6조)
- 성수기11만원 비수기6만원, 야영장 : 6천원

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마.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등

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기상재해로 사용불가 시, 관리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시

사. 휴양림시설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 실비보상

아. 휴양림의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물품판매, 애완동물 등

자. 휴양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취객행위, 고성방가, 지정장소외 취사행위 등

차. 휴양림 이용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개보수시, 운영상 필요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붙임 1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2 참조)

다. 기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입법예고(2013. 10. 24 ~ 11. 13) : 별도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야영장 및 휴양관, 숲속의 집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산110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등) ① 휴양림에 입장하거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 또는 야영장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숲속의 집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숲속의 집 이용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2. 야영장(야영데크 및 바닥) 이용 시간은 사용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성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는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3. 그밖에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 제한) ①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나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가스버너, 숯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4. 각종 행상 행위
5. 휴양림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퇴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개 · 보수 시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 제1항 관련)

1.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개 인	1,000	700	500
단 체	800	500	300

가. 어른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군인(일반병,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은 중・고등학생 요금을 적용한다.

다. 단체 요금은 30명 이상을 말한다.

라.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 한다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야영장	야영데크 (2.7m×2.7m)	1동/1일	6,000		10개소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휴양관	50.3㎡형(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동
숲속의집	49.8㎡형(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동
	66.8㎡형(8인기준)	1동/1일	150,000	70,000	2동

가.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 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나.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별표2]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피해유형	보상 기준	비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요금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당일 취소	·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